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4.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해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p>?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u>적용 해제</u></p> <p>* ? 주요내용: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p> <p>*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p> <p>**'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p> <p><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p> <p>?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p> <p>?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p> <p>?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p> </div>
	<p>?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u>적용 해제</u></p> <p>? 주요내용: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p>
	<p>?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u>2022.4.25.(월) 0시부터 해제</u></p>
권고 사항	<p>?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 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p>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p>○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종</p> <p>?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p> <p>?(취식금지 적용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p> <p>?(취식금지 미적용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p> <p>○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p> <p>○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p> <p>○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해제</p> <p>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p>
--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해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199(2021.6.28.)에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2022.4.25.부터 시행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4)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6)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7)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 상황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등에 종전 방역지침을 계속 적용하는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에 해제된 방역지침을 안내 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바랍니다.

※ 2022.4.2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예정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이동룡

행정사무관

김은미

학생건강정책과
장

전결 04/21
정희권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3302 (2022. 4. 21.) 접수 인성건강과-7031 (2022. 4. 21.)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www.moe.go.kr
전화 044-203-6960 /전송 044-203-6438 / leemong@korea.kr / 공개